

공고 제2024-113호

## 도로점용허가 내용 공고

「도로법」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4년 5월 일

구 리 시장



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도로의 종류        | 일반도로          | 노선명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
| 점용의 목적        | 하수관로 복구       | 점용기간         | 허가일로부터~2032.12.31.     |
| 점용의 장소        | 사노동 391-22 일원 | 점용면적         | 7.00㎡                  |
| 점용물의 종류       | 없음            | 공사기간         | 2024.5.09.~ 2024.5.31. |
| 공사 방법         | 노면굴착          | 굴착 시<br>교통대책 | 신호원 배치후 통행유도           |
| 도로의 복구방법      | 원인자 원상복구      | 도로굴착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
| 점용자의<br>주소·성명 | 하수과           | 그 밖의 사항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|